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김 종 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www.keri.org

“정부규제 중 33% 폐지·개선해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재계는 기업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25개에 이르는 각종 정부 규제 중 3분의 1(1664개)을 폐지·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를 공정거래위나 기획예산처 같은 독자적 정부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행정자치부를 이곳으로 흡수시킬 것을 제안했다. 규제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는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토지·주택 관련 규제, 노사관계 규제가 꼽혔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전달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5025건에 이르는 규제 중 수도권의 기존 공장 신·증설 제한 등 516건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방송사업의 소유·겸영·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등 1148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했다.

최유식 기자 finder@chosun.com

“신문·방송 겸영 금지 풀어야”

한경연, 규제 516건 폐지 1148건 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 중 공영방송사가 너무 많으며 MBC와 KBS-2TV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각종 규제를 고치거나 없애는 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를 마련,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추진단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516건은 폐지를,

1148건은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130여 명의 각계 전문가와 함께 4개월 동안 작업했으며, 주한외국인경제단체 등의 조언을 들었다.

한경연은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관련, “현재 지상파 업계는 ‘4공영(KBS1·2, MBC, EBS) 1 민영(SBS) 체제’로 공영방송사가 지나치게 많다”며 “두 방송사(MBC·KBS2)의 경우 회사 운영이나 프로그램 편성 등은 사실상 민영방송사여서 전환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와 신문사가 교차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대

기업도 방송 및 뉴스 보도 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최충규 박사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다국적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신문 등 매체 간 진입 칸막이를 없애고 있지만 한국에선 이를 막고 있어 종합미디어회사를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각종 의료 서비스의 영리 행위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지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제도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표재용 기자

pjygl@joongang.co.kr

시각장애인이 노란색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위법

아직도 이런 황당규제가...

전경련, 정부 등록규제 1664건 폐지-개선 건의



온천수 안쓰는 목욕탕
간판에 온천표시 금지



본인-부모용 묘지 구입
70세 안넘었을 땐 불법

전경련이 지목한 주요 불량규제

규제 유형	규제 내용
기대효과 대비 과도한 사회적 비용	-묘지 사전매매 금지 -담배스메인 지정 시 영업소간 거리 제한(50m 이내 1인) -도시가스공사 계획 수립 시 가스안전공사, 산업자원부 별도 신고
특정집단 특혜 제공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대행 독점 -경제자유구역 대기입 입주 제한 -제주도 내 자동차 대여업 외지업체 금지
공무원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로 비리 소지	-차량 견인 대행업체 경찰서장, 기초단체장 지정 -먹는물 제조업 조건부 허가 기간에 영업
집행 불가능하거나 저조한 준수	-자동차 최고 속도 제한 -시각장애인 흰색 지팡이 소지 -분묘 설치기간 15년 제한
기준과 절차 문제로 사실상 사문화	-중졸 미만 학생 자비 국외 유학 금지 -일반 목욕탕의 온천 표시 사용 금지 -근로자 기숙사 설비 및 침실 높이, 거주 인원 제한

‘앞을 못 보는 장애인에 빨간색이 나 노란색 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다니면 위법인가?’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는 동네 목욕탕이 간판에 온천 표시를 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두 사례 모두 위법이다.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시각 장애인이 도로를 다닐 때 흰색 지팡이를 짚고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온천법 제16조 3항은 일반 목욕탕은 온천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5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자녀나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자비(自費)로 해외 유학을 보낼 수 없다.

사후(死後)를 대비해 70세 전에 자신이 묻힐 땅을 미리 사놓거나 70세가 안 된 부모를 위해 묘지를 미리 마련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의 사

전매, 양도, 임대사용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천 표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묘지를 사전매매했다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개혁의 우선순위로 치켜세우지만 이 같은 ‘황당 규제’들은 여전히 법 규정으로 남아 시대의 변화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요청으로 6월부터 4개월 동안 정부 등록 규제 5025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말도 되지 않는 규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정부 각 부처가 등록하지 않고 운용하는 미(未)등록 규제까지 포함하면 ‘황당 규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경련은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해 비리 소지를 발생시키는 규제 △지

나치게 이상적이어서 사실상 사(死)문화된 규제 등 5가지 유형을 ‘불량규제’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사례 100건을 발표했다.

이미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에 전산망이 연결돼 무용지불이 된 건강보험증을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급하도록 하는 것도 ‘불량규제’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등록 규제

가운데 ‘불량규제’를 포함해 모두 516건을 폐지하고, 1148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조석래 회장과 이윤호 상근 부회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 결과를 전달했다.

김종석 한경연 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규제 건수가 늘어난 것보다 규제의 내용이 규제 만능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경련이 제시한 규제개혁 방안에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당장 개선이 가능한 규제 184건과 중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중요 개혁 대상 규제 200건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할 경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 종합순위가 현재 30위에서 15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전경련 측은 “조만간 정부 측과 개혁 대상 규제를 선별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 시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부서 전경련 건의 수용팬
기업환경지수 15계단 올라”

“우리나라 규제비용 78조”

삼성연, GDP의 9%... 전반적 개혁 시급

국내 기업들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유럽(3~4%)이나 미국(8%)보다 높은 수준으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경제 규제비용 분석’ 보고서에서 △시장규제 비용 △행정조사 부담 비용 △납세 순응 비용 등 세 가지 비용을 종합한 결과, 국내 규제비용이 연간 총 78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GDP 대비 9.2%에 해당한다. 규제비용이란 기업이나 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을 의미한다. 규제에 의한 편익(이익)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연구소는 이어 가구당 규제비용은 488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총 규제비용을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금액이다. 또 기업당 2436만원, 산업체 종사자 1인당 515만원의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비용 부담 수준을 산업별로 보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이 18조2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사회서비스업(17조6103억원)과 건설업(12조147억원)도 10조원을 넘었다. 이들 세 분야의 규제비용이 전체 규제비용의 61%에 달했다. 특정 산업에 규제 부담이 몰려 있는 셈이다. 또 도·소매업과 운수·창고·통신업도 7조~8조원 이상으로 규제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하루 고용해도 8시간 안전교육... 송전탑 비용 기업에 떠넘겨

기업 경쟁력 발목잡는 '불량 규제'

전경련, 30건 개선 촉구

‘굵히기만 해도 산업재해, 8시간 근무 위해 8시간 교육, 외국 화장품은 3차 포장 허용해도 한국 화장품은 금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비현실적이거나 내용이 모호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량규제 30건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3월 회원사 대상 전수조사에서 접수한 512건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 안전 등 17개 분야 200개의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 한 뒤 △비현실적인 규제 △저품질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 규제 △투자 저해적인 규제 △역차별적 규제 △공공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규제 등 7개 유형 30건의 불량규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준수 가능성이 희박한 비현실적인 규제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8시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이 우선 꼽혔다.

A기업 관계자는 “회사 청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 고용해도 8시간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할 시간은 전혀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또 경미한 부상에도 보통 2주 진단이 나오는 현실을 무시하고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에 재해사

전경련이 선정한 주요 불량규제

부문	내용
비현실적 규제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안전교육(8시간) 이수 의무화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는 무조건 산업재해로 간주
효율성이 낮은 규제	-연간 의약품 제조량의 10% 이상은 소량 포장 의무화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20% 제한
모호한 규제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시설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도 관계기관 해석상 배출구(굴뚝) 기준으로 부과
중복 규제	-개발사업 때 건축허가, 환경평가, 산지전용 단계마다 경관 심사 -건설 관련 법령 위반하면 제재처분 받고 입찰 때도 불이익
투자 저해적 규제	-놀이공원 등 관광시설은 회원제 모집행위 금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연구시설은 '주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간주
역차별적 규제	-외국 화장품은 3차 포장 가능한데 국내 화장품은 3차 포장 금지
공공부담을 민간에 전가	-산업단지 전기공급시설은 사용자가 직접 설치 -매연저감장치 관리운영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여성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전신 피부 관리를 반드시 공개된 공간에서 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기 어려운 규제도 지적됐다.

규제 준수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저품질 규제’로는 환경기준을 잘 지킨 우수업체가 오히려 더 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책정받아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간주해 회원 모집을 허용하면서도 놀이공원 등 관광시설은 회원 모집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연구시설은 주 시설보다 커서는 안 되는 ‘부대시설’로 취급

해 연구개발 의지를 꺾는 규정도 불량규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 공장 주변에 학교가 들어서자 교육시설 법정 소음기준을 적용해 멀쩡한 공장의 문을 닫게 만들거나 산업시설에 필요한 송전탑을 해당 기업이 직접 설치하라고 떠넘겨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린 사례도 지적됐다.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개원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규제개혁의 정의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 즉, 규제의 성과, 유효성, 경제성, 준수율, 투명성 등을 향상시키는 규제수단의 개선과정을 의미.

이를 위해 비규제적 정책수단의 도입, 규제 준수비용의 완화, 규제의 투명성 제고,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의 폐지 또는 간소화 (deregulation)을 포함하는 일련의 개혁을 규제개혁이라고 정의함.

한국정부규제의 문제와 배경

1. 한국 정부규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2. 왜 이런 한국 특유의 규제문제가 발생하는가?

1. 한국의 정부규제의 병폐는 무엇인가?

1. 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다.
2.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간섭이 많다.
3.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과다하다.
4. 비현실적이어서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5.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규제, 원칙금지 방식이다.
6. 중복규제가 많다.

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다.

- 2008년 현재 약 5,000 여개의 정부규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규제 대상분야나 개별 규제사안 만으로 보면 일부 유럽 국가나 일본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것도 아님.
- 우리나라 규제가 과다하다고 국내외의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개수 때문만이 아니라,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

규제의 양보다 질이 더 문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행정간섭이 많다.

- 법령 뿐 아니라 관행과 행정지도에 의한 비공식적 규제관행이 만연.
- 민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
- 국가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는 문화전통과 집행자 편의의 행정 풍토에도 기인

예: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관 간섭은 전통적으로 행정지도 형식
고등학교 설립허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 임에도 교육부가 간섭

민간은 과연 지도와 계몽의 대상인가?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다.

- 상당수의 정부규제가 기준이 모호, 절차가 복잡, 결과 예측 곤란
- 피규제자는 총체적인 불확실성에 노출,
불확실성은 기업에게는 비용상승요인
- 집행자가 과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량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미약,
재량권의 오남용 가능성 증가, 이와 비례하여 부정과 비리의 소지 발생

한국의 정부규제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기자
24시

증권사 설립 당국 입맛대로



김동은

증권부
bridge@mk.co.kr

‘심사’란 어떤 대상을 평가해 자격이나 당락을 판단하는 행위다.

심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모두가 승복할 권위를 가질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 방안에 대해 뒷말이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사대상을 종합증권업 위탁매매업 등으로 세분화하는 원칙만 분명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여건을 심사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예컨대 ‘사회적 평판 등 증권업을 영위할 만한 적격성’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금감위가 볼 때 잘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막연한 기준이다. ‘충분한 전산설비를 갖췄는지 여부’ 등도 마찬가지다.

발표 자료에는 업종별 자본금 규

모조차도 구체적 명시가 없었다. 기자들이 “후속조치로 보다 구체화된 심사기준을 발표하느냐”고 묻자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공개한 편이고 이미 충분한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추가 기준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소위 ‘알려고 하면 다 친다’는 답변으로 들릴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다.

결국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신규 설립 허용 여부가 심사될 것이라는 푸념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평가위 구성도 전권을 행사하는 금감위 손에 달렸다. 감독당국의 재량권 수호의 지 앞에서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처음부터 담보될 여지가 없었다는 냉소도 무리가 아니다.

김용덕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늘 강조하는 ‘서비스 정신’ 이전에 금감원의 영문 명칭(FSS)이 다름아닌 ‘금융감독서비스(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는 데 담긴 뜻을 당국이 얼마나 유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에 따라 신규 설립 허용 여부가 심사될 것...”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친 이상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법대로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 현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정서나 정치논리에 의해 도입되는 규제들이 여기에 해당 (예: 선거법, 가정의례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
- 규제집행자와 피규제자 모두가 규정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 결과 규제집행이 현장에서 규제집행자와 피규제자 간에 타협되는 결과 초래
- 이러한 규제들은 낮은 준수율로 인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어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초래하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음.
 - 가스폭발, 건축물과 교량의 붕괴, 대도시 공기오염 등이 규제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국민생활 보호의 미흡이 문제

한국은 준법투쟁이 가능한 나라



‘먼지’ 잡으려다 기업 잡을라

환경부, 규정 이상 배출 땀 공장 신·증축 불이익

전경련 “청정지역도 이 기준 못 맞춰”

전봇대가 기업의 발목을 잡더니 이번엔 ‘먼지’가 기업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양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벌금을 매기거나 공장 신·증축을 못 하게 하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세먼지(입자 크기 100분의 1mm) 총량 규제’다.

국가가 정한 기준(연 100분의 5g/㎥)보다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의 사업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에 생산설비를 증설하려는 기아 자동차나 LG필립스LCD는 생산량을 줄이든지 아예 투자를 보류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강화도 석모리나 충남 태안군도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

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를 하는 나라도 칠레 한 곳뿐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수도권 기업들이 ‘빈대(먼지) 잡으려고 초가삼간(기업) 태우려고 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상무는 “먼지 총량 규제는 대기 개선 효과는커녕 기업 발목만 잡는 ‘최악의 규제’”라며 “이런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꾀쩍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시행하기로 했다가 그 시기를 2009년으로 미뤘다.

수도권 지역 1000여 개 제조업체를 대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체의 먼지 발생량을 정밀 측정했다. 왜 먼지가 쌓이고 어떤 원인으로 먼지가

발생하는지를 따져 보기 위해서다. 대형 사업장이 몰려 있는 파주(LG필립스LCD), 화성(기아차), 이천(하이닉스) 등 경기도 세 지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조사팀을 이끈 서울시립대 김신도(한국대기환경학회장) 교수는 “공장보다는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중금속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며 “규제 잣대가 비현실적이어서 애꿎은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했다.

기아차 화성 공장은 자동차 도장(塗装)설비에서 나오는 먼지를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LG필립스LCD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LCD 패널 생산량을 계속 늘릴 예정인데 행여 시간을 다투는 공장 신·증축이 늦춰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

정은 더 어렵다. 전경련 이주현 조사역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먼지 배출구마다 대당 1억원에 가까운 굴뚝자동측정장치(클린시스)를 설치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경기도 내 일부 열병합발전소는 아예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재용 기자
pjygl@joongang.co.kr



◆미세먼지 총량 규제=수도권 지역의 대기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2003년 말 제정된 특별법(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황산화물(SOx)·질산화물(NOx)·미세먼지를 ‘3대 오염물질’로 꼽고 이의 배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식품 원산지 표시제 있으나 마나

대형 유통업체, 법시행 3개월 지나도 표시 없거나 애매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매장. ‘푸름’이라는 자체 브랜드(PB)가 붙은 버섯과 일반 야채들이 달랑 비닐 팩에 담겨 팔리고 있었다. 진열대 위에 ‘국산’이란 표시가 조그맣게 써 있었지만 실제 그런지에 대해 판매 점원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니 아마도 국산일 것”이라며 “여러 지역 농산물을 납품받는데다 대부분 하루만 팔고 폐기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생산지의 시·도 명까지 자세히 적어 팔고 있는 바로 옆 친환경 매장과는 대조적이었다.

맞은 편 일식(日式) 코너에선 상품 겉 포장에 ‘원양산’ ‘대만산’이라고 표시된 참다랑어회도 시락을 팔고 있었다. 원산지 표시만 봤을 때는 두 원산지의 횡감 비중이 똑같은 듯 싶지만, 매장 관계자는 “원양산과 대만산의 구성비가 7대 3 정도로 원양산 비중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걸도는 원산지 표시제**
정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의 원산지 표시 조항을 유통업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새로 시행된 법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



원산지?

원산지 표시 기준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50%이상인 주원료가 있을 경우는 그 주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50%가 넘는 원료가 없을 경우는 함량이 가장 많은 상위 2개 이상 원료만 표시
특정 원재료가 제품명으로 쓰여지는 경우	새우튀김의 경우 새우 산으로 표시 호박샐러드의 경우 호박 산으로 표시
특정 원재료가 50%를 넘으나 부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쇠고기 김밥의 경우 1) 주원료인 쌀이 50%가 넘음 2) 쇠고기 김이 특정성분 제품명으로 사용돼 쌀(국산), 쇠고기(호주산), 김(국산)이라 표시

자료:서울시 농수산유통과

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는 기존 면적 300㎡(90평)이상 업소에서 100㎡(30평)이상으로 확대되고, 표시 대상도 종전의 쌀과 쇠고기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 가공품, 수입농산물 등을 포함해 368개로 146개나 늘어났다. 식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상품에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는 셈이다. 또 ‘국산’ ‘원양산’ 등 기존의 광범위한 원산지 표기 대신 자세한 출처를 기입, 소비자들

의 이해를 돕도록 각 유통업체들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시내 일부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은 아직도 상품 원산지를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아예 쓰지 않고 있다. 매장 직원들은 상품의 정확한 출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 서울 충무로 본점 지하 식품매장. 8개월이 2400원

짜리 ‘스시’ 제품에는 판매 가격만 적혀 있을 뿐 회 재료의 원산지는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다. 매장 담당 점원은 “스시니깐 당연히 일본산이 아니겠느냐”며 “당일 처리해야 하는 행사기간 상품들이라 원산지 표시가 자세히 안 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 계열 대형 슈퍼마켓 킴스클럽 사당점은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는 국적불명의 옥수수를 팔고 있다. 생닭도 마찬가지다.

◆**재래시장은 더 심각**
서울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에 입점한 상점들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식품 매장의 한 상인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산이 아닌 것을 국산이라고 해 파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는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농림부의 처벌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허위 표기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보형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과 원산지관리팀 주임은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산지 표기는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규제, 원칙금지 방식

- 대부분의 피규제자를 무능하거나 잠재적인 범법자로 전제하고 대다수의 규정과 절차가 만들어져 있음.
- 이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인정 받지 못하게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인을 약화시킴.
- 대부분의 규제제도가 “원칙금지, 허용 예외” 방식.
- 규제수단이 획일적 기준부과 방식이어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인정 받지 못하여 피규제자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음.

정직과 성실이 인정 받지 못하는 타율규제 풍토

중복규제가 많다.

중복규제: 하나의 피규제자 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규제권자가 존재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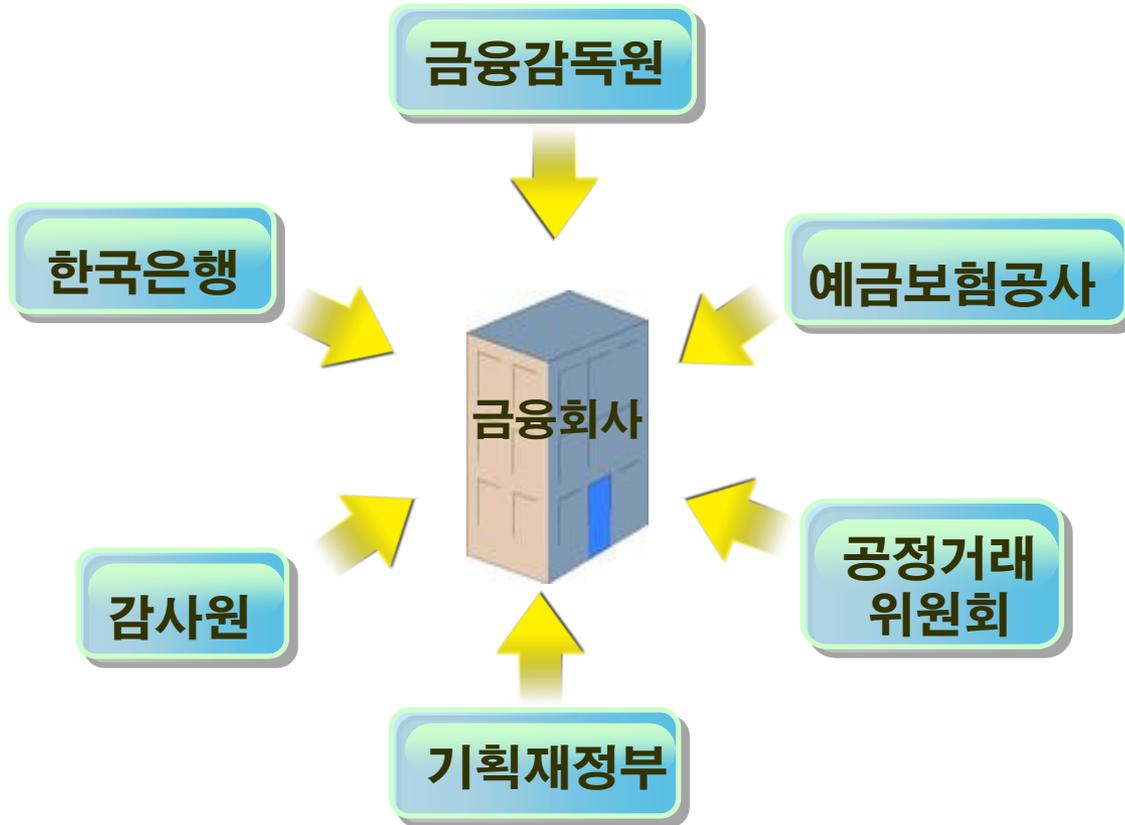
- 이는 규제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경우 분산된 규제집행이 각 행정부서의 주관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과잉규제와 범 정부적 일관성 결여 문제가 심각함.

예시: 같은 내용의 보고의무가 여러 부처에 중복
유사내용의 검사와 교육이 반복
상충되는 규제내용이 혼재

- 각 규제부서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법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부담으로 작용, 이는 규제집행부서의 고유 권한 논리와 영역 지키기 경향의 결과임. 규제집행과정에서 피규제자 입장을 고려한 중복규제에 대한 사전 조정기능이 필요.

하나의 피규제자가 여러 규제권자를 상대해야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검사



같은 사안에 정부기관마다 과징금·처벌...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06년 6월 각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화'와 '조기상환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해 36억6000만원과 5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이들 은행은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똑같은 사안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뿐 아니다. 지난 2005년 통신위원회가 조사중이던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중복 조사를 하는 등 1998년 이후 관련 업계에서 동일한 사안으로만 모두 4차례의 이중 규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린데 또 때리는 '이중규제'



통신·금융분야 이중규제 법률

정부기관	적용법률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통부·통신위	전기통신사업법
금감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방송위	방송법

**금융업, 공정위·금감원서 함께 제재
통신업, 정통부·통신위·공정위 중복
국회 정책보고서 "관할권 배분 필요"**

■ 24일 공정위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등 특정부문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사이에 권한행사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회 정책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인천계양갑)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업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으로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경우 부당 및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 금감위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통신업종에 대해 망의 호환성 및

표준화 등 기술적 규제와 사업자가·약관인가 등에서 정통부·통신위와 중복 규제를 펼치고 있다. 기업간 경쟁측면에서도 상호접속 등의 부당차별, 통신사업자 정보공유,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등에는 정통부와 통신위가, 그리고 합병심사는 정통부와 공정위 간의 중복규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의원은 "이들 기관

간 규제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책임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반 불공정행위 중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전문 규제기관에 관할권을 배분하고, 융합추세하에서 발생가능한 새로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방송법에 공정경쟁에 관한 세부시행사항이 미비해 공정위와 방송위 간의 이원적 규제규조가 작동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책임귀속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가급적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나 규제당국은 그렇게 할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위, 정통부 등과 이중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기관 업무분담 및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

유해물질 기준 제각각... 지나친 점검 횟수... 법규제 중복...

산업단지 기업 72% “환경규제 과도”

#1=전남 여수의 H사는 유독물시설점검때마다 골머리를 앓는다. 지정폐기물 지도·점검은 환경부 산하 기관, 폐기물 일반 및 사업장 점검은 시청, 대기·수질·유독물은 도청으로부터 각각 관리를 받는 등 점검횟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인·허가때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몇차례씩 거절당하는 일도 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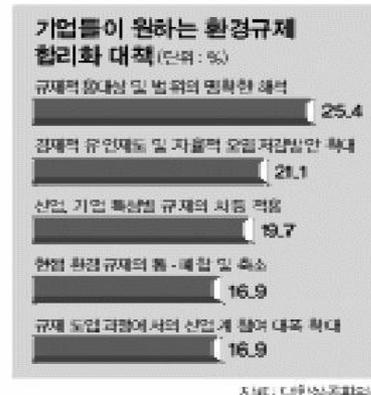
#2=경기 안산의 B사는 질소산화물 농도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각각 다른 농도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경남 창원 의 F사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보관소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 왔으나 소방법 규제도 함께 받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한 부처의 관리법으로 통합되지 않아 이중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 조사... 77% “기업 특성 고려 안해” “규제범위 명확한 해석-자율방안 확대 필요”

■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단면들이다. 이처럼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 10곳중 7곳 이상은 현재 기업의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6일 여수·창원·반월·남동 등 전국 9개 국가·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103개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 기업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 여건을 고려



할때 환경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 22.5%가 ‘매우 강하다’고 답했으며, 50.0%는 ‘비교적 강하다’고 말해 72.5%의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77.3%가 ‘있다’ (‘매우 많음’ 15.2%, ‘많음’ 25.9%, ‘조금 있음’ 36.2%)고 답했다. 환경규제가 다른 규제와 중복되거나 충돌한다는 답변도 27.6%에 달했다. 주로 ▲토

양환경보전법과 소방쪽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약취방지법·수도권대기총량제법 ▲국토이용관리법과 환경법 등이 대상으로 지목됐다.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확대 해석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기업도 31.0%에 달했다. 환경규제가 기업의 자체적인 오염저감 기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31.1%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은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대응책으로는 가장 많은 25.4%가 ‘규제적용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해석’을 꼽았으며, ‘경제적 유인제도 및 자율적 오염저감 방안 확대’를 꼽은 기업이 21.1%로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환경법규 수준을 맞추기도 벅찬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은 단속이나 적발보다는 지원·예로해소·협력차원에서 법규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민중기자 horizon@munhwa.com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공무원의 직업의식 부족이나 자질부족에 기인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님.
불량 고비용 졸속규제의 생산 뒤에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배경이 있음.

구조적 배경

1.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2. 규제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3.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의욕”



불량 고비용 규제

4. 냄비여론과 정부 만을 탓하는 국민정서



졸속 규제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 정책목표달성에는 인력과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됨.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사용은 범 정부적인 횡적 통제기능에 의하여 어느 기관도 임의로 인력과 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음.
-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과 예산과 인력의 제약에 노출되어 있는 규제집행 부서들은 항상 규제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됨.
-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자기 부서의 권한 강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원인제공자에게 떠 넘길 수 있는 근거도 제공함.

과잉규제의 발생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외부화 되어 있음

- 규제를 입안하여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할 유인이 없음.
- 이들은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정부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극소화 시켜야 하는 유인과 압력을 느끼고 있으나, 규제에 의해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유인이 없음.
- 그 결과 더 적은 정부예산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가 정부규제를 통해 더 많은 민간의 비용으로 달성되는 구조적 유인체계가 존재함.
- 또한 규제도입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은 규제도입의 기대효과만 크게 보이고, 규제도입의 부작용과 민간이 지게 되는 부담은 간과하거나 외면하기 쉬움.

고비용 규제의 발생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의욕”

- “과도한 업무의욕” = “밥그릇 지키기”
- 그러나 과잉규제가 과연 “밥그릇 지키기” 때문 만일까?
- 규제집행을 책임진 사람들은 문제 발생 후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정책수단의 선택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력과는 달리 횡적 통제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집행부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근거로 규제수단의 선택에 대하여 사실상의 백지위임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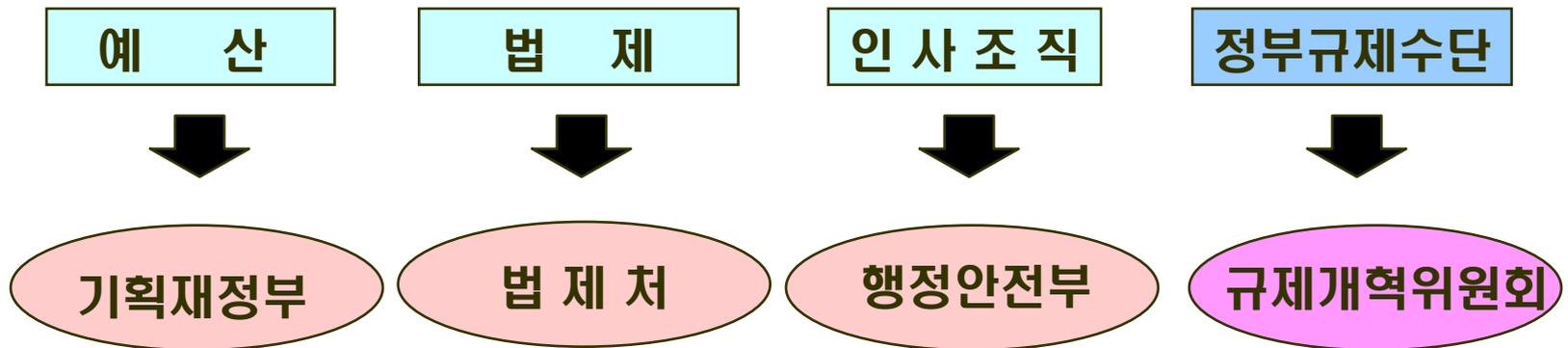
집행자 중심의 규제행정

□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횡적 통제, 품질관리 기능이 필요

□ 예산, 법제, 인사, 조직에 관하여 범 정부적인 횡적 통제기능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 규제수단의 선택과 규제성과의 검증에 있어서 제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 (World Bank, OECD 권고)



생쥐머리새우깡, 칼치캔... 듣기만 해도 끔찍한 '식품명'들이 최근 사람들의 대화에 오르내렸다. 28일엔 미국산 냉동 야채에서도 생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소비자 불만 신고 보고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 '식품 위해사범 무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조치가 확대되고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소비자 신고나 피해구제를 간편하게 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시급히 도입돼야 할 대책들이다.

업체에 신고하면 정부도 보고받게

부정·불량 식품을 발견했을 때 기존의 신고 전화(국번 없이 1399) 외에 온라인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가 새로운 문을 열었다. 업체에 신고했을 경우에도 각 업체가 반드시 식의약청에 접수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의약청은 서울과 6개 지방청에 소비자 불만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부정·불량 식품의 '리콜' 조치도 체계화된다. 업체가 해당 식품을 회수해야 하는 기간은 식의약청이 판단하는 위해(危害)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생쥐 머리는 식품 혐오 물질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참치캔에서 발견된 칼 조각은 그 자체로 1등급 위해 물질이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발암물질이나 식중독균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도 1등급으로 분류돼 재빨리 회수조치된다.

집단소송제로 피해보상 강화

소비자의 피해보상은 지금까지 식품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제조물책임법'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적용돼 왔다.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여러 사람이 같은 식품을 먹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표자 한 사람만 소송을 해도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대신 집단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피해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영업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학교 급식 식중독 사건 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 알 수 있게

'식품 이력 추적 관리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식품의 제조, 가공부터 판매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유 제품에 부착된 특수 태그의 번호를 식의약청이나 업체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어떤 목장의 우유를 어느 공장에서 가공 처리해 어떤 매장에서 판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이미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올해는 영·유아 조제식 부문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 발생 예방과 사후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식품 위해사범 무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해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나 판매를 통해 취득한 무당이익을 몰수할 예정이다.

의원입법 不實덩어리

베끼기·선심성·로비형등 얽히고설켜
17대국회 총5321건 발의 17%만 가결

#사례 1=지난 15일 노동부는 물론 노사의 시선이 온통 국회로 쏠렸다. 일명 '이상수 특고법'으로 불리는 특수고용직보호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경제5단체는 즉각 공동성명을 통해 "노사 입장이 명백히 대립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정부법안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추진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편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행정부가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국무회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하지 않아 결국 해프닝으로 끝

났다.

#사례 2=지난해 8월 30일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이라는 거창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불과 일주일 뒤인 9월 7일 남해안발전특별법, 같은 달 20일에는 남해안발전지원법 등 판박이처럼 유사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모두 남해안을 관광·문화중심지로 만든다는 취지의 법으로 대표적인 지역구 쟁기기형 선심성 입법이다.

남해안이 뜨자 동해안도 덩달아 나섰다. 12월에는 울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이 제출됐다.

국회 관계자는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 특별법이 나오자 서해안은 왜 없냐는 우스갯소리가 돌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안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말도

의원입법 건수와 가결률



안 된다"며 "특히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법안이 붓물처럼 쏟아진다"고 개탄했다.

베끼기형, 민원형, 선심성 지역구 쟁기기용 등 함량 미달인 의원입법 사례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2005년 12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까지 부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선심성 입법으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경찰공무원의 하위직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 대상을 경위 계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2005년 6월 13일 제출된 법안이 근속승진 대상을 '경위'까지 확대하자 29일 발의된 법안은 한술 더 떠 이를 '경감'까지 확대하더니 잇따라 10월 13일 발의된 법안은 아예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켰다.

법안 제안 취지부터 기본 골격은 대동소이하지만 무리하게 혜택 범위를 넓히려다 법안의 당초 취지는 실종됐다.

법안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졸속 입법도 부지기수다. 국회법 제79조 2항에 따르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은 예산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예산 확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엉터리 통계를 인용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왜곡된 법률안도 제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죄질이 나쁜 로비형도 있다. 3~4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돼 정치권을 발각 뒤집어 놓았던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로비 파문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금품 로비에 입법권을 멋대로 악용했다.

의사협회는 한나라당 모 의원에 게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을 청탁하며 수천만 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부실 입법이 남발되다 보니 웃지 못할 한심한 일도 생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에 서명을 받으러 왔을 때 아이디어가 괜찮다 싶으면 내용을 그대로 베껴 애초 발의자보다 먼저 의안과에 접수해 자신의 공으로 만드는 사례까지 있다"며 혀를 찼다. A3면에 계속 ▶
손일선·임성현기자

규제개혁의 기본원칙과 방향

1. 자유경쟁, 공정경쟁의 보장
2. 규제의 순편익 극대화
3. 규제의 유효성 확보
4. 규제의 투명성 확보
5. 국제적 보편성 확보
6. 민간 자율 및 자기책임